

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 
전략적경제협력협정

## 서문

대한민국(이하 “한국” 이라 한다)과 에콰도르공화국(이하 “에콰도르” 라 한다)(이하 공동으로 “양 당사국” 이라 한다)은,

양 당사국 간 우호관계와 협력의 특별한 결속을 강화하고 경제협력 확대 및 심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,

이 협정이 양국의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과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창출하여, 세계시장에서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,

빈곤을 경감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발전 증진을 약속하고,

양 당사국 간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영역에서 생활 수준을 제고하며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,

양국의 무역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규칙을 제정하고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고,

양국의 무역 관계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조건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며,

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 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국의 영역 간 무역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방지할 것임을 결의하고,

이 협정이 양 당사국이 채택한 국제적 약속에 따라, 환경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증진을 위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임을 인식하며,

노동권의 보호 및 집행을 추구하고, 생활 수준과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며, 노동 사안에서 양 당사국의 협력 및 역량을 증진시키고,

국제 무역에서 포용적 무역과 중소기업<sup>1</sup>의 중요성을 인정하며,

우수한 거버넌스와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사업 환경이 경제 효율성의 향상과 무역 및 투자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을 인식하고,

양 당사국 간의 상이한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하며, 그리고,

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」과 양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, 지역 및 양자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며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---

<sup>1</sup> 에콰도르의 경우, 중소기업은 서민연대경제의 구성원을 포함한다.